

2015.11.16

「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 개정

1. 개정사유 및 시행일자

• 개정사유

‘글자크기 신축적용 가이드라인(안) 의견조회’ 결과 반영 및 ‘원산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’, ‘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’ 등을 통하여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.

• 시행일자 : 2015. 11. 16.

2. 주요 개정내용

□ 원산지표시 8포인트 글자크기 적용대상 축소 완화(4조)

- (기존) 원산지표시대상 공산품과 농수산품에 일괄 적용
- (개선) 공산품에 대하여는 적용 배제, 농수산품은 규정 유지

□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정비(제18조)

- 고시와 지침에 각각 규정된 고발·송치관련 조문을 고시로 일원화
- 「원산지표시 검사 및 제재조치 운영지침」의 고발 규정(제6조) 삭제
- 허위표시 외의 중요 위반행위(손상·변경, 오인표시)에 대하여도 벌칙 적용 강화(국회 지적에 따른 고발기준 조정)

2015.11.16

□ 「대외무역관리규정」 개정(1.9.) 사항 반영

- 철근 및 합금강류 적정 원산지표시방법 추가(별표 2)
 - (철근 등) HS 7214,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(1ton 기준)
 - (합금강류) HS 7225 7226 7228, 현품에 예외적인 표시 허용

□ 「관세법시행령」 원산지확인위원회(236조의4)

개정사항 반영 등(제52조)

- 위원확대(10인 이하 → 20명 이상 30명 이하) 개정사항('15.2.6) 반영
-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방지를 위한 사전진단 실시 및 서약서 징구
- 「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'해촉기준' 반영